

투자일임(자문) 계약권유문서

본 투자일임(자문)계약 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계약의 체결), 동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등에 의거, 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면자료입니다.

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상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본 서면자료와 함께 첨부된 투자일임(자문)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토마토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정하는 서면자료를 교부받고 내용을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인 _____(인)

투자일임(자문)의 범위 및 투자대상 상품

1. 투자일임업(자문업) 이란

- 1) 투자일임업 :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그 고객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2)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투자일임(자문)의 범위

- 1) 투자일임(자문)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2) 투자일임(자문)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3)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에 대한 사항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4) 기타 위와 관련된 부수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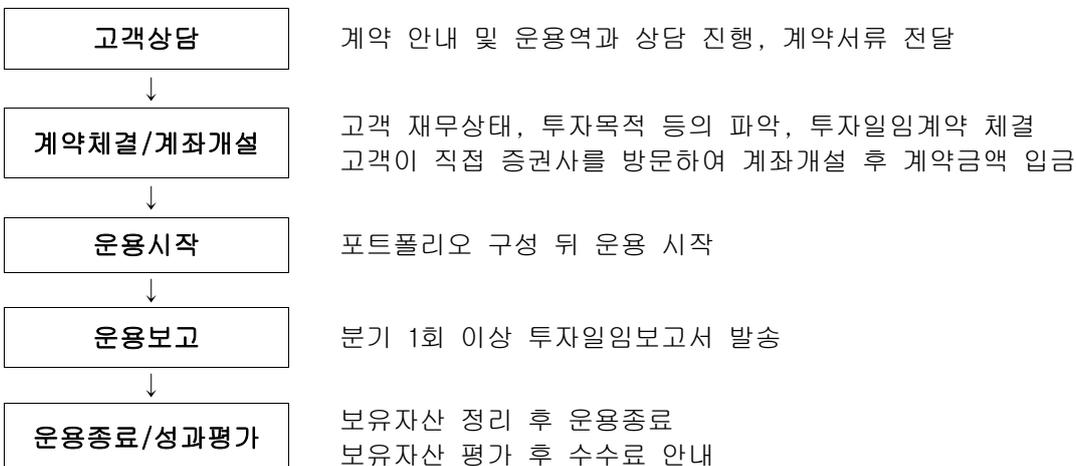
3. 투자대상 상품

회사가 고객의 계약재산을 일임받음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투자일임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과의 협의에 의해 그 대상을 투자일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
 - 지분증권 : 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SPAC, 리츠 등
 -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 수익증권 : MMF, 상장지수펀드, CMA 등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증권”이라 함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국내외 증권 모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1. 투자일임업무 절차



2.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

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운용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투자방법을 통해 고객의 투자재산을 운용합니다.

- 1) 회사는 항상 고객의 성과를 생각합니다.
- 2) 회사는 투자기법과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 담당자를 구별하며, 고객은 일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 일임 담당자는 기업탐방활동 및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발굴하는 노력을 합니다.
- 4) 회사는 일임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운용회의를 운영합니다. 증시 주변환경과 증시여건, 그리고 일임 담당자별로 운용중인 업종과 종목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일임 담당자는 자신이 운용중인 투자자산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고객자산의 관리

고객자산은 거래증권사의 고객명의의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고객이 카드와 인감을 보관하므로 회사는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일임(자문) 담당자에 관한 사항

당사의 투자일임(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은 「별첨1」 투자일임(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과 같습니다.

<투자일임(자문) 담당자는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

1.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사전 파악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별첨2」의 서식에 의해 사전에 파악합니다.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연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2. 투자일임(자문) 담당자의 변경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 투자일임(자문)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의견을 듣습니다.
(투자일임(자문)계약서에 명시)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투자일임(자문)계약서에 명시)

4.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받으며, 현재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5.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의무, 책임

고객은 투자일임(자문)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자문)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일임(자문)계약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투자일임(자문)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투자일임(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5) 투자일임(자문)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를 결정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6)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 7)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8)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 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9)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10)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11)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12)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13)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 14)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행위단,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없는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 15)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단,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고객의 의무, 책임

- 1) 통지의무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일임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 비밀유지 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자문)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자문)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

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3) 투자일임(자문)결과에 대한 책임사항

정당한 투자결과로 발생한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일임(자문) 수수료의 산정과 지급방법

1. 수수료의 분류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 및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를 수취하며, 투자일임수수료의 경우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나누어집니다.

- ① 기본수수료 : 기본수수료는 투자일임서비스의 성과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동안 제공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 ② 성과수수료 : 성과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는 별도로 투자일임서비스의 성과에 연동되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평가한 투자실적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 ③ 해지수수료 : 해지수수료는 투자일임서비스 및 투자자문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 ④ 투자자문수수료 : 투자자문수수료는 계약기간 동안 제공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2.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중도해지시 수수료의 반환

- ① 투자일임수수료 중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일임수수료 중 성과수수료는 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시에 성과수수료 지급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합의된 성과수수료의 전부를 계약의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수수료는 변경 후 계약을 기준으로 잔존 계약일수에 대해 산정한 수수료와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경과 계약일수에 대해 산정한 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해지효력이 있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해지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단, 해지수수료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수료의 지급일 또는 반환일에 지급 또는 반환되지 않을 경우 고객 또는 회사는 10%의 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투자일임수수료 중 기본수수료

기본수수료는 계약자산의 크기와 투자상품에 따라 「별첨4」와 같이 산정합니다. 단, 고객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일임수수료 중 성과수수료

- ① 성과수수료는 투자일임서비스의 성과에 연동되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계약 당시 제시된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의 달성시 초과수익을 수수료로 정합니다.

- 가. 기준수익률 : 투자일임서비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
 - 나. 초과수익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평가한 투자실적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초과수익=계약자산금액*(투자수익률-기준수익률))
- ② 투자상품별 성과수수료율 체계는 「별첨4」와 같이 산정합니다.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실적의 평가 및 보고

1. 계약 개시시점의 재산형태 및 만료시점에서의 재산반환형태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만료하는 시점에서 고객에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합니다. 단,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합니다.

2. 투자실적의 평가방법

- 1) 투자수익률의 계산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재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단, 평가재산의 계산은 전일종가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미상장된 공모주 등)은 편입 단가로 계산합니다.
- 2) 미실현이익의 계상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사전산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채권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실현 이익은 사전산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투자실적의 보고

투자실적은 투자일임보고서를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전자우편에 의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의 보고 내용

-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등
- 7)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 8)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 9)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 10)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 11)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 12) 매매회전율
- 13)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투자일임(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 경력

| 성 명 | 직 위 | 주 요 경 력 | | 기 간 |
|-------|-----|------------------|------------|-------------|
| 명 준 우 | 운영역 | 토마토투자자문 | 운영본부 운용/자문 | 2013 ~ 현재 |
| | | 이토마토 | 투자클럽 운용 | 2012 ~ 2013 |
| | | SBS CNBC | 온라인 증권방송 | 2010 ~ 2012 |
| | | 우리투자증권 | e-biz 영업부 | 2004 ~ 2009 |
| | |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 |
| 박 준 현 | 운영역 | 토마토투자자문 | 운영본부 운용/자문 | 2014 ~ 현재 |
| | | 이토마토 | 투자클럽 운용 | 2008 ~ 2014 |
| | | 솔론, 팍스넷, 씽크폴 | 전문가 | 2006 ~ 2007 |
| | | 한국투자증권 | 주식 운용 | 2003 ~ 2005 |
| | | LG투자증권 | 주식 운용 | 1989 ~ 2003 |
| |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회신해 줄 것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은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한 확인을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 | |
|----------------------------------|-----------------------------------|
|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 제공 |
|----------------------------------|-----------------------------------|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실 경우 맞춤형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규정에 위반되어 계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투자자정보>

| PART 1 | | 배점 |
|--|--|----|
| 1. 전체 자산 대비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20% 미만 (4) <input type="checkbox"/> 20% 이상 ~ 40% 미만 (3) <input type="checkbox"/> 40% 이상 ~ 60% 미만 (2) <input type="checkbox"/> 60% 이상 (1) | |
| 2. 월 소득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전혀없음 (1) <input type="checkbox"/> 200만원 미만 (2) <input type="checkbox"/>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 <input type="checkbox"/> 400만원 이상 (4) | |
| 3. 총 자산규모(순자산)은 어떻게 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1억원 미만 (1)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 <input type="checkbox"/>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 <input type="checkbox"/> 3억원 이상 (4) | |
|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input type="checkbox"/> 은행예금, MMF, CMA, 원금보장형 ELS (1) <input type="checkbox"/>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채권형 펀드 등 (2) <input type="checkbox"/>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주식형 펀드 등 (3) <input type="checkbox"/> 주식, ELW, 선물옵션, 파생상품 펀드, 해외펀드 등 (4) | |
| 5.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1)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2)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4) | |
| 6. 투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1) <input type="checkbox"/> 채권 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2) <input type="checkbox"/> 주가지수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3) <input type="checkbox"/> 적극적인 매매를 통한 높은 수익 실현 목적 (4) | |

| | | |
|---|---|--|
| <p>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p> | <p><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1)</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2)</p> <p><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3)</p> <p><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4)</p> | |
| <p>8. 고객님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p> | <p><input type="checkbox"/> 매우 낮은 수준 (1) (금융상품에 가입해 본적이 없는 정도)</p> <p><input type="checkbox"/> 낮은 수준 (2)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정도)</p> <p><input type="checkbox"/> 보통 수준 (3)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p> <p><input type="checkbox"/> 높은 수준 (4) (펀드, 채권, ELS, 파생상품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p> | |
| <p>9.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p> | <p><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1)</p> <p><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p> <p><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3)</p> <p><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4)</p> | |
| <p>10.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p> | <p><input type="checkbox"/> 만 20세 ~ 만 40세 (4)</p> <p><input type="checkbox"/> 만 40세 ~ 만 60세 (3)</p> <p><input type="checkbox"/> 만 60세 ~ 만 80세 (2)</p> <p><input type="checkbox"/> 만 80세 이상 (1)</p> | |

<투자자정보에 기초한 투자자유형 및 세부자산배분유형>

| 투자자유형 | 세부자산배분유형 | |
|--|----------|---------|
| <input type="checkbox"/> 안정형 | ■ 이종자산2 | |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 |
| <input type="checkbox"/> 안정추구형 | ■ 주식4 | ■ 이종자산2 |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 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
| <input type="checkbox"/> 위험중립형 | ■ 주식3 | ■ 이종자산2 |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 |
| <input type="checkbox"/> 적극투자형 | ■ 주식2 | ■ 이종자산1 |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
|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 ■ 주식1 | ■ 이종자산1 |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

* <투자자정보> 배점 합계를 별첨3 <투자자유형 분류 배점표> 에 따라 선택

<기타>

| PART 3 | |
|--|--|
|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input type="checkbox"/>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2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2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유형이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파악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에 대해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고객명 : _____ (인 또는 서명)

(주)토마토투자자문 상담자명 : _____ (인 또는 서명)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체크리스트>

고객 체크리스트는 투자일임(자문)계약에 있어 고객이 최소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또한 토마토투자자문이 고객에게 투자일임(자문)계약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므로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판매 임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은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자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자정보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고객명 : _____ (인 또는 서명)

(주)토마토투자자문 상담자명 : _____ (인 또는 서명)

투자자유형 분류표

[투자자유형 분류 배점표]

| 유형 | 세부자산배분유형 | 배점 |
|-------|----------|---------------|
| 안정형 | 이종자산2 | 15 미만 |
| 안정추구형 | 주식4 | 15 이상 ~ 20 미만 |
| 위험중립형 | 주식3 | 20 이상 ~ 25 미만 |
| 적극투자형 | 주식2 | 25 이상 ~ 30 미만 |
| 공격투자형 | 주식1 | 30 이상 |

[투자기간 분류]

| 기간 | 분류 |
|----------------|----|
| 6개월 미만 | 단기 |
| 6개월 이상 ~ 2년 미만 | 중기 |
| 2년 이상 | 장기 |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유형 분류]

| 구 분 | | 위험 감내도(투자기간 등) | | |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투자자성향 | 고위험 ↑↓ 저위험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 | | 안정추구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 | | 안정추구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 | 안정형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 | | 안정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 자산배분유형 \ 투자자유형 | 고위험선호 ← → 저위험선호 | | | | |
|----------------|-----------------|-----|-------|-----|-----|
| | 주식 | 주식1 | 주식2 | 주식3 | 주식4 |
| 이종자산 | 이종자산1 | | 이종자산2 | | |

[세부자산배분유형 분류기준]

| 주식 | | | | 이종자산 | |
|-------------|------------|------------|------------|--------|-------|
| 주식1 | 주식2 | 주식3 | 주식4 | 이종자산1 | 이종자산2 |
| 상장종목 | 코스닥 최대 80% | 코스닥 최대 60% | 코스닥 최대 20% | 주식 | 국채 |
| 시총 제한없음 | 시총 500억 이상 | 시총 1천억 이상 | 시총 2천억 이상 | 회사채 | 지방채 |
| 업종 제한없음 | 업종내 7종목 | 업종내 5종목 | 업종내 2종목 | 공모주 | MMF |
| 종목당 100%이하 | 종목당 70% 이하 | 종목당 50% 이하 | 종목당 20% 이하 | SPAC | CMA |
| 로스컷 제한없음 | 로스컷 50% | 로스컷 40% | 로스컷 20% | 상장지수펀드 | |
| 편입비 최대 100% | 편입비 최대 90% | 편입비 최대 80% | 편입비 최대 50% | 리츠 | |
| | | | | 파생상품 | |

투자일임(자문)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1. 기본수수료를 체계

(투자일임)

| 투자 유형 | 목표수익률 | 기본수수료율 |
|-------|-------------------|------------|
| 안정형 | 10% | 2.0% 이내 협의 |
| 안정추구형 | KOSPI 등락률 + Alpha | |
| 위험중립형 | | |
| 적극투자형 | | |
| 공격투자형 | | |

(투자자문)

| | | | |
|-------|-------|-------------------|--------------------------|
| 계약 금액 | 공격투자형 | KOSPI 등락률 + Alpha | 500만원이내/월 (기간별 유연 운영) |
|-------|-------|-------------------|--------------------------|

※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맞춤운동

|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른 맞춤운동 | 목표수익률 | 10% | KOSPI 등락률+Alpha | |
|--------------------|-----------------------------|-----------------------|----------------------------|---------------------------------------|
| | 위험에 대한 태도 | 위험 회피형 | 위험 중립형 | 공격형 |
| | | 안정형 |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 제안상품 | (원본손실을 제한하며, 누적적인 절대 수익 추구) | (수익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손실 감수) | (고객의 1차적인 자산배분을 가정한 주식 운용) | |
| 자산 배분 전략 | 주식편입비 | 0% | 0 ~ 80% | 0 ~ 100% |
| | 자산구성방법 | BottomUp | BottomUp | Top Down(Index 추종) +BottomUp(Alpha획득) |
| 리스크 관리전략 | 펀드Loss Out | NAV기준 수익관리 | 원본기준 손실관리 | KOSPI 기준 위험관리 |
| | 종목Loss Out | tight (예: 0%) | loose (예: 20~40%) | loose (예: 50%) |

2. 성과수수료율 체계

| 투자 유형 | 기준 수익률 | 성과수수료율 |
|-------|-----------|-----------|
| 안정형 | 성과 수수료 없음 | |
| 안정추구형 | 10% 이내 협의 | 40% 이내 협의 |
| 위험중립형 | | |
| 적극투자형 | | |
| 공격투자형 | | |

(주1) 기준 수익률과 성과수수료율은 고객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2) KOSPI 등락률 = 계약체결일 전일의 KOSPI 지수를 기준으로 계약 만기일 또는 해지일(평가일)의 KOSPI 증가의 증감율

예) KOSPI 등락률 = (평가일 KOSPI 증가/계약체결일 전일 KOSPI 증가)*100-100

회 사 개 요

1. 회사명 : (주)토마토투자자문 (전 : 웰페어투자자문(주), 사명변경 : 10.07.19)

Tomato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2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5층)

www.tomatoasset.com

2. 회사연혁

| 일자 | 내용 | 비고 |
|------------|-----------------|-----------------------------|
| 2000.04.25 | 박앤윤 컨설팅 설립 | 납입자본금 12억원 |
| 2000.08.21 | 메리츠투자자문(주) 사명변경 | 메리츠증권 지분출자(메리츠증권 자회사) |
| 2000.08.30 | 유상증자 | 납입자본금 50억원 |
| 2000.09.08 |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00-03-42 |
| 2003.12.09 | 자본감소 | 납입자본금 35억원 |
| 2005.07.04 | 웰페어투자자문(주) 사명변경 | 이윤영 지분출자(100%) |
| 2005.07.14 | 자본증가 | 납입자본금 40억원 |
| 2009.02.02 | 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 정건영 지분출자(100%), 대표이사 김황래 취임 |
| 2009.07.01 | 대주주 변경 | 에코플러스 46% 외 개인 4인 54% 지분출자 |
| 2010.07.09 | 대주주 변경 | 이토마토 100% |
| 2016.12.26 | 자본증가 | 납입자본금 42억원 |
| 2018.08.30 | 자본감소 | 납입자본금 21억원 |
| 2022.07.25 | 자본증가 | 납입자본금 25억원 |

3. 대표이사 : 복 권 수(취임일: 2021.08.02)

충남대학교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졸업

하나은행 센트럴시티지점 사원

키움증권 온라인투자자문팀 사원

(주)이토마토 기획팀 팀장

(주)코인통 대표이사

(주)증권통 대표이사

(주)토마토투자자문 대표이사(現)

4. 자본금 : 25억원

5. 대주주현황

| 주주명 | 지분율 | 프 로 필 |
|---------|------|--|
| (주)이토마토 | 100% | - 설립일 : 1994년 11월 10일 - 본 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2(합정동, 이토마토빌딩) - 업 종 : 방송업 및 방송물제작 / 금융투자 정보 제공 / 금융 S/W 개발 - 자본총계: 207억원(2022년 3월 기준) |